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1145) 제안설명

-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!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.동료 위원님 여러분!
새누리당 종로 1지역의 남재경 의원입니다.

-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-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·지구 등의 지정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.

-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는 ‘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’ 및 ‘부동산 종합정보’ 등을 통해 건축물 대장, 토지이용계획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- 그러나 현행 시스템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상세한 건축정보 및 건축제한 정보의 검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

- 지구단위계획은 규제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도시관리계획 중의 하나입니다.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, 제한사항을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또한 매우 무겁습니다.

- 이에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 부동산 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제한, 건폐율 및 용적률, 건축한계선의 제한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,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, 건축행위 위반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처벌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 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-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